開放化를결과 情報산업 政策방향

쌍무협상 止揚하고 多者間협상 指向해야

尹 東 潤
〈遞信部 通信政策局長〉

이 글은 한국정보과학회가 주최한 제5회 정보산업리뷰에서 발표된 것이다. 〈편집자 註〉

요즘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보산업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20세기 후반기에 밀려오기 시작한 대변혁 이른바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부응한 산업, 경제적인 변화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즉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생활의 전영역에 걸쳐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은 자국의 산업구조를 정보집약적 산업구조로 개편함과 동시에 타국에 대하여는 시장개방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개방의 압력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자유화의 물결은 지난 9월 중순 남미 우루과이의 한 휴양도시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에서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이 회의의 핵심은 서비스교역을 GATT의 무역 자유화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정보산업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통신, 컴퓨터, 정보처리 용역업 등이 서비스교역 대상으로서 혹은 첨단기술분야로서 GATT의 무역자유화 대상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신이나 컴퓨터, 정보처리 용역업 등은 선진국 특히 미국이 절대적인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로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물론 유럽조차도 자유화를 꺼리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2차산업에서의 경쟁력약화를 3차산업이나 첨단기술의 해외진출로 만회하려는 정책을 계속 강행하려하고 있고 일부 선진국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보산업분야에서의 개방의 물결은 계속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세계산업이 전반적으로 정보화, 소프트화가 진전되고 있고 무역 전반에서 정보산업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볼 때 이 분야에 대한 개방화의 물결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산업의 대외개방 현황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시장은 전반적으로 거의 다 개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퍼스널컴퓨

터에 대한 수입제한과 S/W개발권 보호문제, 그리고 정보통신회선 사용관계 등에서 약간의 제한이 있으나 최근들어 미국의 끈질긴 개방화 요구와 국내 이용자들의 증대되는 정보수요를 충족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한들이 점차 해제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산업분야에 대한 대외개방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보기기 분야

컴퓨터의 경우 중형이상(30만달러 이상)은 완전히 수입이 개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전자계산조직도입 심의위원회"나 "전자계산수입 확인요령" 등에 따른 절차상의 제한이 있으나 중형급 이상에 대한 국산컴퓨터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수입이 허용되어 있다.

소형 및 주변기기에 대하여는 국산화촉진 품목에 대한 수입필요성, 기술이전 및 국산화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수입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수입에 제한을 가해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퍼스널컴퓨터의 경우에는 범국민적 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종에 한해서 수입한다는 방침하에서 전반적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왔다.

통신기기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품목이 자유화되어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 전자공업진흥회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하고 형식승인 대상품목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승인받은 후 수입토록 하는 정도이다. 특히 통신기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교환기의 경우 100만 달러 이상의 외자로 구입하는 품목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국산품 구매를 요구하는 절충교역제도(Off-Set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 정보처리 분야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하여는 수입 제한 사항이 없으며, 지적소유권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의 법적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보처리서비스업의 경우 온라인 정보처리업과 온라인 정보제공은 통신회선 사용관계와 직결된다. 현재 공중전기통신사업법상 내·외국인 구별없이 정보통신회선에 대한 타인통신 매개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특정 통신회선의 공동사용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규제·사항내에서 외국인에 의한 온라인정보처리 서비스업은 제한되고 있다. 특히 국가 기간전산망 사업의 경우 전산화 대상업무의 특성, 규모의 방대성으로 인하여 정책적인 차원에서 외국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

우리 나라에서 통신사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를 경영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공중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새로운 공중통신업무의 신속한 육성,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신공사 이외의 자를 지정하여 공중통신사업의 일부를 경영하게 할 수 있다(전기통신기본법 제7조). 이에 따라 현재 한국 데이타통신주식회사가 공중통신사업자로 지정을 받아 공중정보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전기통신사업은 독점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독점의 형태가 법적독점이냐, 자연적 독점이냐의 차이 또는 정부 독점이냐 공사형태에 의한 독점이냐 또는 대규모기업에 의한 독점이냐의 차이가 있을 망정 전기통신사업의 독점형태는 세계의 보편적인 형태이며,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의 일부인 정보통신사업도 대체적으로 독점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0여년간 정부기관에 의한 법적독점 형태를 취하여 왔으나 80년대 초반 한국 전기통신공사와 한국 데이타통신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전신, 전화사업 및 정보통신사업을 독점적으로 경영토록 하고 있다.

즉, 전신·전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통신분야는 한국전기통신공사로 하여금 경영토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는 한국데이

타통신주식회사를 지정하여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어 전기통신분야(정보통신분야)에 대하여는 대외 개방을 제안하고 있다.

◇개방시의 효과 및 대응전략

◎개방시의 효과

정보산업분야의 개방시 효과문제는 발전초기단계에 있는 국내정보산업시장 보호측면과 이용자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구나 국내시장개방은 필연적으로 상대국의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상대방의 무역정책이 다시 자국시장에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므로 이 모든 역동적 효과를 예측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행의 정보산업분야에 대한 부분적인 제한을 해제했을 경우 국내시장이나 이용자 측면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기기 분야

중형 이상의 컴퓨터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개방되어 있어 국산컴퓨터 개발 이전에는 절차상의 제한을 가한다 하더라도 국내시장 보호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소형 컴퓨터도 주요 외국업체들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 수입을 개방하더라도 추가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내 주요 컴퓨터 제조회사들이 이미 외국의 기술제휴선으로부터 제조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국내시장에는 기술제휴선을 통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제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설계기술을 확보 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경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휴대용 기종의 경우 현재 국내생산품이 없고 일본 제품이 우수하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H/W 개방에 따른 S/W의 보호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기기의 경우 88년에 거의 완전한 수입개방을 목표로 점차 수입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체기술개발 또는 기술도입 등에 의한 국내생산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입대체 및 수출증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청된다.

또한 주변기기에 대한 개방압력은 분명치 않으나 미국에서는 컴퓨터 등(Computers)이라는 표현으로 컴퓨터분야에 포함시켜 협상과제로 하고 있으며, 개방시에는 미국보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급증이 예상된다.

○정보처리 분야

정보산업분야의 대외개방에 대한 중점과제의 하나인 소프트웨어 개발권의 보호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과기처를 중심으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이 입법 중에 있으므로 언급을 생략하기로 한다.

정보처리분야에서는 요즘 온라인 정보처리서비스 분야가 새로운 분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는 단순한 컴퓨터 파우어 제공으로부터 각종의 소프트웨어 패키지 제공에 이르기까지 사업분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국내 정보처리사업을 위한 특정 통신회선 공동사용 및 타인사용을 허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외국의 선발업체에 의하여 수익성 있는 국내 정보처리 시장이 선점되어, 취약한 국내 정보처리사업의 성장력을 잃게 될 것이다.

둘째로는 날로 시스템화, 온라인화 되어 가고 있는 금융, 보험, 관광, 항공 등 국내 서비스산업 부문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세째로 공중통신망보다는 특정망의 난립에 의한 망간의 호환성이 저해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대한 외국업체의 참여를 허용할 경우 국내의 핵심 정보산업 시장을 해외 업체에 제공하게 되고 아직 취약한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보기기, 정보처리,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정보통신 분야

현재로는 국내시장 규모가 작고 세계적으로 통신사업에 대한 전통적인 독점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개방 요구가 적은 편이나 앞으로의 시장 잠재력과 서비스산업의 성공적인 침투를 위한 기반조성 작업으로서의 개방요구가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뉴라운드 협상대상의 최우선 순위에 통신업을 놓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개방물결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보통신업 개방요구는 정보교환행위 허용 및 특정통신회선의 재판매 허용 요구로 나타날 것인 바 이를 허용할 경우에 실질적인 통신사업의 개방으로서 국내에 통신사업자의 난립 및 통신망간의 호환성 저해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또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대한 시장개방 효과와 마찬가지로 외국 통신사업자의 비교 우위에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핵심 통신시장 침식 및 정보통신 기술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응전략

일반적으로 시장개방정책방향은 국산화의 정도, 그리고 향후 성장가능성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산업 기술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국산화 정도가 낮은 수준에 있는 반면 한국의 우수한 인력과 높은 발전의욕 등을 감안할 때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개방정책의 허와 실을 분별하여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정보기기 분야

미국의 정보산업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는 기본적으로 쌍무협상과 다자간 협상의 양면작전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입장에서는 쌍무협상보다는 다자간협상을 통하여 개방시기를 결정하되 면목상의 제한을 폐지하여 무역마찰을 해소하고 구매제도 등을 통한 실질적인 국내산업 보호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중형 이상의 컴퓨터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개방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비관세장벽을 설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다. 소형컴퓨터도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앞에서 본바와 같이 국내 업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므로 이를 개방하여 국내 컴퓨터 활용을 촉진하고 국내 업계의 기술개발 필요성을 자극시켜야 한다.

통신기기의 경우 전자교환기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이제 수출 단계에까지 이른 점을 감안할 때 원가절감, 품질향상, 경쟁력 향상을 통한 능동적인 자세로 개방압력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주변기기와 휴대용컴퓨터에 관하여는 대일 무역적자를 고려하여 수입선 다변화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처리분야

외국인이 국내에 온라인 정보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특정통신회선 보다는 공중통신망을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공중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정보처리업 및 정보제공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특정통신회선의 공동사용 및 타인사용은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중통신망을 통한 정보처리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전액 외국자본에 의한 것은 제한하여 국내 업자와의 합작투자에 의한 기술전수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기간 전산망사업의 경우 그 성격상 외국업체의 참여는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분야

기본적으로 통신분야에 대한 개방은 미국, 일본 등 극소수의 국가만이 이를 허용하고 있고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통신분야에 대하여는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정보의 국가주권을 내세워 보호입장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라는 상품은 기존의 공산품과는 달리 일단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고 동시에 여러 곳에 손쉽게 확산될 수 있으며 다른 모든 산업의 기반조성에 사용된다는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개방정책을 추진하는데 간과할 수 없

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현시점에서 정보통신 시장의 개방은 정보통신이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공중망 우선정책, 전기통신의 표준화정책, 정보화사회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등에 많은 역작용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에 해외 정보통신사업의 국내시장 진출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전신, 전화와 통신회선의 설치 및 임대 등 기본통신사업의 개방은 불가능하며 외국정보의 국내유입도 공중망우선정책에 한하여 국내 통신사업자를 통한 제공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多者間 협상에 의한 개방추진

개방화 물결은 세계 전체,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정보산업부문에서도 이를 피할 수는 없다. 이러한 개방화물결에 대응하는 우리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쌍무협상에 의한 개방압력보다는 뉴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에 의한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전략상 유리할 것이다.

다행히 뉴라운드의 서비스무역 자유화 문제에 대하여는 선진국간, 선진국 대 개도국간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합의점에 이르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비스산업이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아울러 기존의 전통적 공산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개방은 거의 이루어진 상태이고 미국 등의 압력으로 추가개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선진국의 공산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제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문제 2〕-〈제한시간 2분〉

우리는 위대한 자연의 힘에 언제나 머리를 숙인다. 당신이 지금까지 본 가장 큰 '그늘'은 무슨 '그늘'이었읍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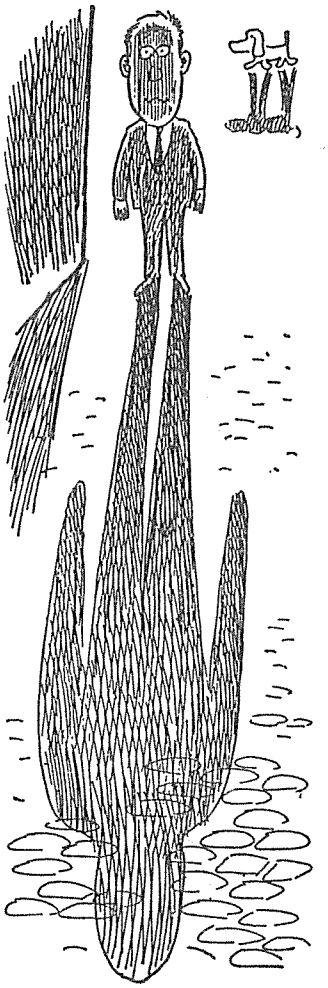

〔문제 2의 해답〕

지구의 그늘인 밤이다.